

2022년도 하반기 반부패 · 청렴 중점 추진과제

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

순 서

I.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1
II. 하반기 반부패 정책 주요 추진 방향	5
1.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기반 강화	8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	10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추진	12
4. 지방자치 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4
5. 공직자 청렴교육 이행력 강화	16
6.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지원	18
7.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20
8. 온라인 부패·공익 신고 창구 관리 강화	22
III. 반부패·청렴 제도 소개 및 안내 사항	25
1. (안내사항)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27
2. (안내사항) 부패신고 사건의 처리	29
3. 청렴노력도 평가 확대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강화	30

순 서

[참고자료]35

1.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유의사항 37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이행 관련 안내 46
3.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콘텐츠 목록 47
4. 부패·공익신고 창구 개선 협조요청 사항 48

[부 록]53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55
2. 부서별 업무담당자 58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I.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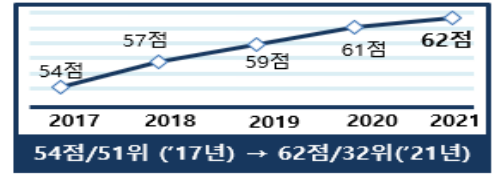
- **(법령)**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5개 반부패 법률과 하위법령, 대통령령인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 부패예방과 청렴정책 전반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함께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 행위규범인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공공재정 환수법 운영으로 공익침해행위 및 공공·민간 접점의 부패 예방·관리
- **(제도)** 반부패 규범 및 공정채용 실태점검 등을 통한 취약분야 개선, 부패방지 교육·평가 등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공익·부패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 부패 예방을 위한 종합 정책 추진

< 반부패 법령과 제도 운영 현황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감사관회의 국가청렴도(CPI) 개선 대책	
반부패 법령 운영	반부패·청렴 제도 운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청탁금지법 ● 공공재정환수법 ● 이해충돌방지법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반부패 행위규범 제도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 공공재정지급금 누수 취약분야 점검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청렴컨설팅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공직자 등 대상 청렴교육 ● 부패·공익 신고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제도 구축·운영

□ 중단없는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및 국민 신뢰 제고

- **(국가청렴도 지속 향상)** '21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는 전년에 비해 1점 상승한 **62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 180개국 중 32위(전년대비 1단계 ↑) 차지, 전년에 이어 30위권 초반에 안착

- 국제기구도 한국의 반부패 성과와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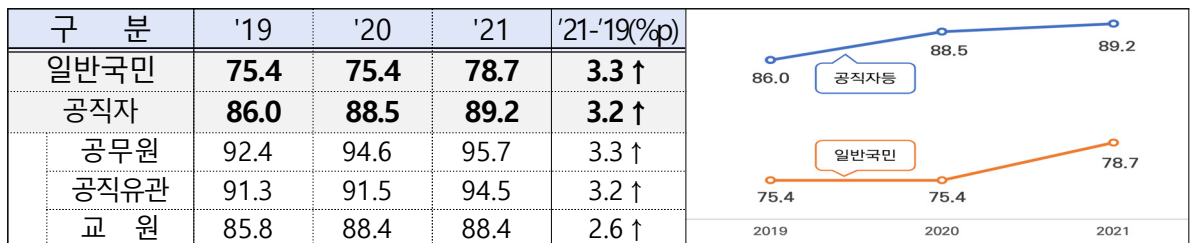
※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 '21.11월) G20 실무그룹이 발간한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흥미롭고 모범사례로서 유용하다'고 평가

- **(국민신뢰 제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지속 향상*되고,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

*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 ('17) 8.13점 → ('18) 8.35점 → ('19) 8.47점 → ('20) 8.53점 → ('21) 8.54점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전년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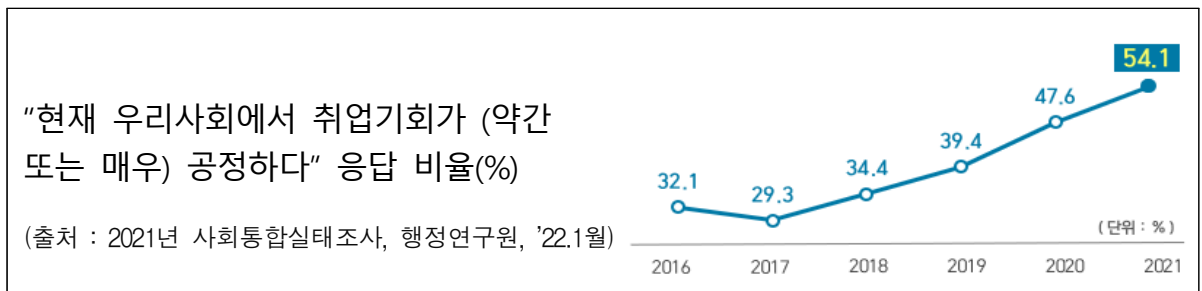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시행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응답 비율(%)>



(출처 : '21년도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일반국민 2천 명), 권익위, '21.9월)

-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공정채용 정책 추진 결과 채용공정성 신뢰 수준 지속 향상

* '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679건 적발 (수사의뢰 133건, 징계요구 546건), 피해자 구제 3,515명





2022년도 하반기 반부패 정책 주요 추진 방향

Ⅱ. 2022년도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 과제

추진 과제 개요[요약]

1.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반부패 법령·제도 운영 및 부패 취약분야 발굴·개선

-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기반 강화
 - 제도 운영지원 및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 ② 청탁금지법의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
 - 제도개선 등 이행 및 취약분야 실태점검,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추진
 - 부정청구 관리 현황 등 이행실태 점검, 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 ④ 지방자치 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22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집중 점검

공직사회 청렴 역량 강화

- ① 공직자 청렴교육 이행력 강화 : 부진기관 특별교육 등 실시
- ②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지원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 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 부패신고 포상금 상향 및 긴급구조금 도입
- ② 온라인 신고 창구 관리 강화
 -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2. 반부패·청렴 제도 소개 및 안내 사항

- ① (안내사항)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 안내 의무화
- ② (안내사항) 부패신고사건의 처리 : 감독(조사)기관의 직접 처리
- ③ (제도소개) 청렴노력도 평가 확대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강화

- ◇ 법령 유권해석 질의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 운영상 불확실성 최소화
- ◇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점검을 통한 법 준수 노력 촉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 운영 지원

- (유권해석) 공문·이메일·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이해충돌 방지법령 유권해석 수요에 적극 대응
 - ※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하여 사례집 발간·배포 예정(연말)
- (해석자문) 주요 쟁점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5월~)
 - * 반부패규범해석자문단(80명)을 통해 법 적용범위·해석기준 등 관련 법리적 해석 보완

□ 공공기관 대상 교육·홍보 확대

- (교육)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지속 추진
 - ※ '22.8.31. 기준 총 654개 기관 대상 대면·비대면 직접교육 실시
- (설명회)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워크숍 개최(10~11월 예정)
 -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과 동시 개최 예정(청탁금지제도와 주관)
- (홍보물 배포) 10가지 행위기준 및 위반시 제재 등을 담은 영상자료, 홍보 포스터 등 제작·배포(10월)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점검

- (실태조사) 전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8~9월)
 -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이행 및 관련 조치 현황,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징계·과태료 부과 등) 현황 조사
- (현장점검)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제도이행 취약분야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9~10월)

[협조 요청 사항]

- 전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9~10월 예정)
관련 자료제출 등 협조 (전 지방자치단체)
 -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제도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은 해당사항 적극 개선 등 협조
- 이해충돌방지법 법정의무교육 이행 (전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관련 신고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필요시 권익위에 지원 요청
-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협조 (해당 기관)
-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등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 (전 지방자치단체)
 - 부패취약시기 등에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활동 적극 전개
 -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 (전 지방자치단체)
 -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 (전화) 044-200-7679 (메일) csy1009@korea.kr

- ◇ 제도운영 관련 이행점검 및 규범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 교육·홍보를 통한 자율적 법 준수 노력 촉진

□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등 이행점검

- 공직자에 대한 특혜 제공 관행 개선 등 기 통보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추가 이행 독려
 - * 지자체 기부금 협찬 수수관행 개선('19.7.),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관행 개선('19.9.)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온정적 법 집행 등 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기관별 시정조치 결과 확인·점검
 - ※ 위원회 시정 요구('22.5.16.)에 대한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 여부 평가(청렴노력도 감점 지표)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취약분야 실태점검

- (규범력 강화)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 ※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박영순 의원안, '20.8.), 권익위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부여(유동수 의원안, '20.11.) 등 국회 계류 중
- (취약분야 점검) 법 위반 이슈, 반복되는 금품제공 관행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예) 운동부 코치 등에 대한 불법찬조금 제공 관행 등

□ 법 준수인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 (교육) 기관 유형별 빈발 위반행위, 주요 유권해석례 및 제도 운영 방향 등 공유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 교육 실시
- (홍보) 공직자와 국민이 가진 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금지 행위,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전파(보도자료, 카드뉴스 등)
 - ※ 예) 추석명절 및 졸업·종강·퇴직 등 시기별 공직자 대상 관련 유의사항 등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해당 기관)
 - ※ 해당 사항 있는 지자체만 관련 내용 기 통보('22.5.16)
-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적극 참여 (전 지방자치단체)
 - (교육)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 교육 참여(10~11월 예정, 별도 공문시행)
 - (홍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적극 활용 협조
 -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111('22.8.10) 문서 참조

- ◇ 부정청구 근절을 위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서면점검)** 공공재정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 등 제재조치의 적절성 여부 확인
- **(심층점검)** 서면점검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을 통해 심층점검 실시

□ 이행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에 대해 신청 등을 받아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한 1:1 컨설팅 실시

□ 규범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추진

- **(제재 강화)** 행정청에서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등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 ※ 현행 : 제재부가금 100% 면제 → 개정안 : 50% 감경
- **(법령 보완)** 행정청의 착오에 의한 오지급에 대해서는 환수 시 이자를 면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법 개정 추진
 -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완료('22.5.31.~6.15.),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중

[협조 요청 사항]

- 일반국민,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등 적극 홍보** (전 지방자치단체)
 - ※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안내문 배포, 사업공고문·신청서·사업 홍보물, 안내 자료 등에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내 철저
- 공공재정 집행 후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기관별 자체 점검 실시 등 공공재정 관리 강화 (전 지방자치단체)
- 부정청구 등 발생 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법적 조치사항** 및 기록관리 철저 이행 (전 지방자치단체)
 - ※ (주의사항) 부정청구등에 “오지급”이 포함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반기별 공공재정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 철저 (전 지방자치단체)
 - ※ 입력 사항 :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 공표 등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의견 제출** (전 지방자치단체)
 -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누락된 법률에 대해서도 제출 요망
-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로 신청

◇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체계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확립

□ 평가 개요

- **(대상범위)** '21년 청렴도 측정기준(적극행정, 갑질행위 항목) 하위 20%에 포함되는 79개 기초자치단체의 46,917개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 ※ '22년 추진 결과 성과 분석 후 '23년 이후 광역·기초 자치단체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평가방식)**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자치법규 전수점검*과 현안과제 발굴** 방식을 병행하는 이원적 평가 실시
 - * 79개 지자체 중 청렴도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일부 기관(3개 내외)
 - ** 지역의 주요 부패·비리 사건이나 규제 이슈 등을 현안 과제로 발굴해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지자체의 유사 자치법규 일괄 개선
 - 인사, 계약, 인·허가 등 지자체의 부패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우선 분석·검토하고, 필요시 기관 방문 점검 병행
- **(개선권고)** 평가결과 발굴한 부패유발요인 관련 지자체별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부패유발 규제는 지자체 규제심사기구에 통보
 - ※ 점검시 발굴된 특정 지자체의 개선안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여 공유하고 권고안에 적극 반영

□ 주요 평가사항(예시)

- **(인사)** 채용·승진·징계 등에서 불투명하거나 재량권 남용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
 - ※ 특별채용, 특별승진, 징계처분, 갑질행위 등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 등

- **(계약)** 상대방에 비해 지자체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거나 과도한 재량·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 ※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 입찰·계약 시 모호한 보증금 면제기준 등 운영
- **(위원회)** 주요 위원회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
 - ※ 위원(위촉직)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부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 미흡, 외부위원 참여 배제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는 규정 등
- **(인허가 등)** 인·허가, 조사, 단속 및 각종 개발·지원사업 등에서 특혜 및 재량권 남용을 유발하거나 부패발생 개연성이 많은 규정
 - ※ 도시계획·건축·개발 등 관련 조례의 인·허가 기준, 문화·관광·체육 등 지원 기준, 공영주차장·장사·보호시설 등 지자체 시설 관련 조례의 진입기준 및 특혜·불공정 등
- **(복무·감사 등)** 구성원의 청렴·성실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
 - ※ 출장, 복무, 청렴 등 자체 규정 등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등

[협조 요청 사항]

- 개선과제 발굴 등 협력체계 구축 (해당 기관)
 - 지자체 실태 확인, 부패유발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한 현장 방문 시 협조
 - 지자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규제유발 조문 등 제출
 - ※ 관련 문서 : 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2653(2022.08.01.)
- 개선과제 권고 이행 및 자체 부패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해당 기관)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과제의 적극적 수용 및 이행
 - 권익위 자치법규 평가 계기로 현행법령에 대한 지자체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활성화해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의 자정 노력 강화

- ◇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책임 강화
- ◇ 기관 유형별 체계적인 교육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자체 교육역량 향상

□ 부패방지교육 실태점검 제도 현황 및 결과

- **(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 청렴교육 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 관리방안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 2022. 1. 4. 개정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 2022. 7. 19. 개정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점검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을 받는 2,096개 공공기관*의 '21년('21.1.1.~12.31.) 법정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 **(점검결과)** 교육 실적 미제출 22개 기관, 교육 이수율 저조 90개 기관 등 총 112개 기관이 청렴교육 실적 부진 기관에 해당

※ 최근 3개년 교육 이수율 : ('19) 93.1% → ('20) 93.2% → ('21) 95.0%(저조기관 : 90개)

※ 최근 3개년 실적 제출률 : ('19) 95.8% → ('20) 96.9% → ('21) 98.9%(미제출기관 : 22개)

□ '21년 실태점검 후속조치 : 실적 부진기관 대상 특별조치

- **(이행계획서)** 교육실적 저조(60%미만) 기관 및 실적 미제출 기관은 실적 부진 사유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안 제출

- 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운영 프로세스 도입** 및 기관별 교육여건 등을 분석해 **교육 지원 방안 적극 마련 예정**

※ 이행계획서를 충실히 제출한 기관 대상 청렴연수원 주관 별도 청렴 교육 과정 운영, 청렴교육 콘텐츠 제공, 청렴교육 전문강사 섭외 등 적극 협조

- **(특별교육)** 실적 부진기관 청렴교육 업무 총괄 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의 중요성,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 관리자 맞춤형 교육 운영

* 감사담당관, 감사실장 등이 대상이며, 소규모 기관의 경우 행정업무 총괄자 참석

□ '22년 법정 교육 이행 관리 방향

- **(부진기관 기준 강화)** 전 직원 교육이수율 저조 기관 기준을 상향 ('21년 : 60% → '22년 : 75%)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교육 이행력 강화

※ 이 외에도 기관장 미이수 기관 또는 고위공직자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경우 '부실기관'에 해당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이행 계획서 제출 등 페널티 부여

- **(고위직 교육 참여 활성화)** 위로부터 시작되는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교육참여를 통한 전 직원 교육 독려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청렴노력도)의 [2]-7-③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지표 상 100% 미만의 경우 감점 대상임을 유의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22년 청렴교육 이행 실적 관리 철저 (전 지방자치단체)

- 올해 교육실적 부진기관은 내년도 이행계획서 제출 및 특별교육 대상

※ '22년 실적 부진기관 기준 : 전직원 교육이수율 75% 미만, 실적 미제출 기관, 교육실적 허위 제출 기관 등

- ◇ 기관의 청렴역량이 미흡하거나, 청렴도 수준이 낮은 기관이 **자율적 청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다각적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

□ 청렴컨설팅 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반부패 역량 강화가 요구되거나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 제시
 -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각급 기관으로 확산함으로써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 도모
- ※ '06년 청렴컨설팅 제도 최초 도입, '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제도 명문화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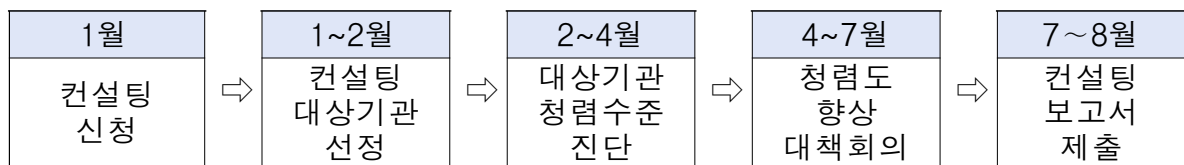
- **(추진현황)** 제도 최초 도입 이후 16년간('06년 ~ '21년) 총 193회 실시
 - ※ 중앙행정기관 22회, 광역자치단체 21회, 기초자치단체 60회, 시·도 교육청 13회, 교육지원청 5회, 공직유관단체 66회, 국공립대학·병원 6회
 - '22년에는 23개 기관을 선정하여 청렴컨설팅 진행 중
 - ※ 중앙행정기관 2개 기관, 기초자치단체 13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8개 기관
- **(추진성과)** 최근 3년간 컨설팅 대상기관 중 당해 연도에 평균 70%의 비율로 청렴도 상승의 효과가 나타남

구분	컨설팅 실시 전 대비 청렴도 변화					
	컨설팅 당해 연도		1년 경과		2년 경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19년 대상기관(24개)	17개(71%)	2개(8%)	20개(83%)	0개(0%)	18개(75%)	1개(4%)
'20년 대상기관(25개)	16개(64%)	1개(4%)	17개(68%)	0개(0%)	-	-
'21년 대상기관(22개)	17개(77%)	2개(9%)	-	-	-	-

□ 청렴컨설팅 진행 절차

- **(진행방식)** 청렴도 우수기관에는 ‘청렴컨설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은 미흡기관 멘토링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룹 컨설팅 방식 지원
 - 기관 유형·규모, 권역, 업무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개 멘토 기관과 2~3개 멘티 기관이 컨설팅 그룹을 자율 구성하여 신청
- ※ (멘토) 청렴도 1, 2등급 대상 / (멘티) 청렴도 4, 5등급 대상
- 신청 그룹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10여개 그룹 선정·진행

[참고] 청렴컨설팅 진행 흐름도



- **(지원내용)** 컨설팅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권익위·외부자문위원·멘토기관이 함께 입체적인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
 - 기관의 청렴도 결과, 부패사건 발생현황, 청렴시책 현황과 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 분석·제공

□ 참고 사항

- **(멘토기관 인센티브)** 멘토역할로 청렴컨설팅 과정에 참여한 청렴도 우수기관(종합청렴도 1, 2등급)에 대해서는 청렴노력도 평가시 가점 반영
 - 멘토기관의 참여·노력도와 멘티기관의 청렴도 개선정도 등을 평가하여 가점 차등 부여
- **(’23년 추진방향)** 고착화된 부패경험 등 특이점이 나타나는 기관에 대한 심층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렴컨설팅 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제고할 예정
 - * 이메일 응답 형식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대면 심층면접 방식을 도입하되,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부 전문 조사업체 활용 예정
 - 심층조사 방식의 신규 도입을 위한 소요 예산 확대 반영 추진
- ※ ’23년 예산안 정부안 반영 완료, 현재 국회 예산안 심의 중

- ◇ 신고 접수·처리 단계부터 **철저한 신고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교육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요 제도변경 사항

- **(부패신고 포상금 상향)** 부패신고 포상금이 종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22.7.19.,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
- **(부패신고 긴급구조금 도입)**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급('22.7.5.,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의 주체를 종전 '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확대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개선)**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상담·접수'에서 '조사·수사·보호신청등'까지 확대
- **(징계 요구의 구속력 확대)**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의무 위반 시 위원회의 징계요구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

[기타 주요 개정추진 사항]

-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보완·확대)** 부패신고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 신분보장조치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
** 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②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요건 삭제
- ▲ **(비밀보장의무 위반 조사 개선)** 조사범위를 종전 '관계기관' 또는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으로 확대
- ▲ **(신분공개 피해 방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관련 기사의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신고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비밀보장의무 교육)** 신고자 신분 노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신고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22년 5개 기관 완료)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21년 기 실시('21.4~6월 12개 기관 대상)

[주요 교육자료 배포]

-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매뉴얼 배포(3월, 공직유관단체 1,218개, 국회의원 300명)
- ▲ 시청각 교육자료 배포(6월, 1,534개 기관)

- **(신고제도 인지도 제고)** 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홍보 영상물, 라디오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

※ 종합청렴도 평가 시 기관별 제도 홍보 실적 평가(11월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신고 접수·처리 담당자가 신고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여 접수단계부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전 지방자치단체)

※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의무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권익위 제출 요청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기관별 자체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제작·배포 시 권익위 사전협의 협조 (해당 기관)

※ 법 개정 사항 등이 최신화되어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요청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9월 예정)를 통해 신고자 보호 정책 공유, 의견 청취 및 기관협력 방안 논의 예정이므로 협조 (해당 기관)

- ◇ 기관별 신고창구 운영과 명칭 다양화로 인한 접근성·편의성 저하, 보안체계 미흡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청렴포털로 신고창구 단일화 및 관리강화**

□ 온라인 신고창구 청렴포털 관리 강화

- **(실태조사)**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예정('22년 하반기)

※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 라인 참고('21.11.9. 배포)

- **(기능개선)** 청렴포털로 부패·공익 신고를 하는 신고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에 공공기관 신고창구 개설 조치 필요

※ '22년 8월 현재 개설기관 609개 → '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청렴 노력도) 지표에 반영된 사항임에 유의

"청렴포털 시스템"은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부패공익신고를 편리하게 신고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익위의 종합 반부패 정보시스템

□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 올해 새롭게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인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구축('22.5.19.)
 - 대국민 위반행위 신고 및 공직자 의무 신고 접수·처리, 결재 및 결과통보, 통계·관리기능 등 제공
-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세부 행위기준 신고를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활용 요청

※ 활용방법은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의 매뉴얼, 교육자료 참조

[협조 요청 사항]

-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요청 (전 지방자치단체)
- 청렴포털에 공공기관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해당 신고창구 연동 및 연동·연계방식 조사시 회신 요청 (전 지방자치단체)
-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조치 및 시스템 활용 협조 (전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 청렴 제도 소개 및 안내 사항

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 공공기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 · 시행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22.7.5.)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 의무화 근거 신설

* 제82조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안내의무화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기관 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

- 포스터·배너 파일, 안내문(서식)을 제작·배포하여 각급기관 보유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제도 위반행위 발생 사전 방지 도모

※ (참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관련 홍보요청, 권익위 심사기획과-2124(2022.7.5.)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의무적으로 안내 (전 지방자치단체)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별지 4 서식 등을 활용하여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안내실시 후 증빙자료 (수령증 등) 5년간 보관

※ 취업제한제도 미안내로 인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민원, 소 제기 등 문제 제기 가능성 사전 예방

□ 의의 및 근거

- **(의의)** 비위면직자가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후 취업제한의 심리적 부담을 통해 부패 통제를 일상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3조(해임요구), 제89조(벌칙), 제91조(과태료) 등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②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가목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목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취업제한기관)** ① 공공기관, ② 부패행위 관련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등, 협회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간
- **(제재처분)**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취업제한기관 재직 중인 경우 해임요구 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 강구 요구
 - 취업제한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해임요구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이첩 받은 감독(조사)기관의 직접 처리

- 법령상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재이첩 등)할 수 있도록 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그러나, 일부 감독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하부기관(피신고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부패협의를 의심 받는 피신고기관에서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 야기

[협조 요청 사항]

- 감독(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유로 재이첩 등 처리가 필요한 경우 권익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치 (전 지방자치단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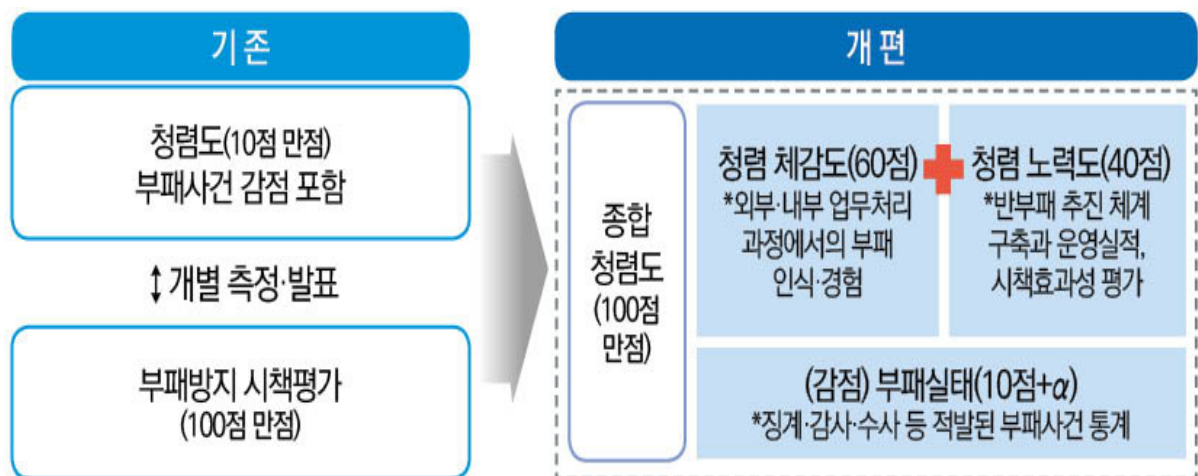
청렴노력도 평가 확대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강화

- ◇ 종합청렴도 중 청렴노력도 평가(舊 부패방지 시책평가) 확대·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과 취약분야 개선을 유도

□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목적)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시책추진 과정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
-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경험을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평가와 차별화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



- (실시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 지표(기초자치단체 적용 특화모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대부분 기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필수지표(8개)만 적용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	배점
① 청렴정책 추진체계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정성) -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등을 반영한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내용	10점
	·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정성)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 등 활동실적과 사례	10점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정량)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운영 기반 마련 이행 여부	5점
② 청렴정책 추진실적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정량+정성)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실적, 취약분야 개선 사례 및 효과성	12점
	·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정량) - 고위직 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청렴교육 이수현황 등	10점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및 조사 시 자료제출 이행여부를 평가	5점
	· 가점 ①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정량+정성) - 멘티기관의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② 부패사건 자체 적발 노력(정량) - 기관별 부패사건 총 건수와 자체 적발률에 따라 평가 ③ 적극행정 구현 노력(정량) -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건수 ④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연계(정량) - 청렴포털 공공기관 신고창구 개설 및 기관 자체 홈페이지 연동 여부	0~5점
③ 시책 효과성 평가	·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설문) -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 노력, 청렴교육 이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5개 항목	7점

※ 총점 59점(가점 제외)으로 평가 후 100점으로 환산

□ 향후 일정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국내 반부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진행 중(6월~)
- **(시책 효과성 평가)**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8 ~ 11월)
- **(실적보고서 제출)** 지표별 작성서식*에 따라 추진실적('21. 11월 ~ '22. 10월) 및 증빙자료를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11월)
 - * '노력도 영역 실적 제출 서식 통보'(청렴조사평가과-2523호, 2022. 6. 28.) 공문 참고
 - ** 10월 중 별도 공문을 통해 세부적인 제출기한과 청렴포털을 통한 제출 방법 등 안내 예정
- **(이의제기)** 청렴포털을 통해 정량지표별 결과 확인 후, 실적 불인정 등 평가결과 오류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록(12월)
 - ※ 실적보고서 첨부자료 외 추가 자료 제출 불가, 정성지표·설문결과 제외
- **(현지점검)** 기관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선정하여 추진실적 및 근거 자료 확인 등 실시(12월)
 - ※ 허위 실적자료 제출, 자료 조작 등에 대해 감점·청렴도 등급 하향 조정 등 조치
 - ※ 청렴체감도 평가 명부·부패사건 자료 확인을 위한 현지점검(9월)과 별도 실시

□ 자율적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관련 참고자료 안내

-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21. 8월)
 - 각급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시행한 창의적이고 효과성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시책내용, 애로사항과 극복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성
 - ※ 자료위치 : 국민권익위 누리집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부패방지 시책사례

[협조 요청 사항]

- 연초 수립된 반부패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수사례, 증빙 등 확보(연중) (전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즉시) (전 지방자치단체)
 - * 청렴조사평가과-2581호(2022. 7. 6.) 참고하여, 해당기관 관보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
-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보고서 제출(11월 초) (전 지방자치단체)
 - * 별도 공문 안내 예정

참 고 자 료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유의사항

1. 제도 개요

- (목적) 민간전문가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이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필요
 - 고위공직자의 경우 중·하위공직자들에 비해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
 - ※ 특히, 민간에서 공직으로 진입하는 경우, 그간 민간영역에서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고위공직자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기 검열기제로서 작용
- 또한, 기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더불어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다각적 통제 가능
-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제출 의무

- **(제출 의무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상의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와 그 범위가 일치

- **(제출 사항)**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 제출 사항
① 법인·단체에 재직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③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학교 등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 기한)** 임용일,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

- **(제출 대상)** 소속기관장

※ 기관장이 제출 의무자인 경우 소속기관(또는 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 **(제출 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별지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 가능

3. 제출 항목별 세부 내용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명칭 및 소재지) 법인·단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법인·단체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재직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법인·단체의 업무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OO전자는 반도체 개발 및 통신장비·휴대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본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범위는?

-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단체로서 사고·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은 제외됨
- *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단체)으로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필요(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가능)
- * 정당의 당직이 없는 당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한 것은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 부문의 법인·단체는 제외됨

Q2. 직위 또는 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지?

- A. 임용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다면 직위·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함

2 대리, 고문·자문 활동

- (기관명) 임용 전 3년 이내에 대리했거나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기관의 정식 명칭(대리·고문·자문한 대상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작성
 - ※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법인·단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는 작성 제외
- 개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서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소속하여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 작성
 - ※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법인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제3자가 없으므로 소속 법인·단체명을 기재
- (활동기간) 기관 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기간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대리, 고문·자문 제공 관련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자문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대리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 A. · “대리”란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상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대리행위는 직업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행한 행위임
 - 변호사의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정사의 신청·청구 등의 대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에서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변리사의 특허 등에 관한 대리, 관세사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대리 등이 전형적인 대리에 해당함

Q2. 고문·자문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 A. “고문”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문”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고문·자문 행위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행위임
 - 고문계약, 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고문, 자문위원,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의견 제시·조언하는 지위에 위촉·선정·채용되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문·자문에 해당함

Q3.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 행위가 없었음에도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 A.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행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형태 등에 비추어 구두계약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리, 고문·자문 등을 수행했던 경우로 볼 수 있음

Q4. 개인변호사이거나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로서 임용 전 3년 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사안이 300건이 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명을 모두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A. 임용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의 기관명(개인인 경우 성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Q5. 법인·단체에 속하여 소속 법인·단체의 건축사, 회계사 등 임원 및 직원에게 일반적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A. 소속된 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함. 지정변호사 등으로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담당한 사안이 아니라면 소속된 법인·단체가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까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Q6. 법인에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어떤 항목에 작성해야 하는지?

- A. 법인에 고문,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다면 해당 법인을 “재직정보(재직했던 법인·단체 등)” 항목과 “고문 및 자문활동(대리, 고문·자문 등)” 항목에 모두 작성해야 함

3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 (업체명 및 소재지) 관리·운영했던 업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본인이 관리·운영했던 ○○○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제공했던 업체임. 본인은 해당 업체의 사장으로서 음료 발주, 재고 관리, 업소 관리 등 카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관리·운영의 의미는 무엇인지?

A. “관리·운영”이란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영리행위 전반에 대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2. 대표자가 아닌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이었던 경우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체의 관리·처분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도가 아닌 한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에서 사업체의 일부 업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Q3. 단순히 자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Q4.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A. 등록대상자가 비영리법인에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5.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록대상 업체 등의 범위는?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영업허가·영업신고 등을 한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함

4. 협조 요청사항

○ (추가 확인에 대한 자료 협조 동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협조할 필요

※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때에 향후 필요 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추가 확인에 협조할 것임을 동의(별지 제7호 서식 일부 수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수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제출 내역의 공개

- (공개 주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 ※ 기관장의 제출 내역은 소속기관(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개 결정 가능
- (공개 범위)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하였던 사업·영리행위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고문·자문했던 내역은 법령, 업무편람, 본 유의사항을 참조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다만 공개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공개

※ 정보 공개 관련 다른 법령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참고**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별지 제7호 수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관장 귀중

제출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해충돌방지법 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이행 관련 안내 (6.27, 행동강령과-6507)

- **(수의계약 체결시 확인 의무)** 각급 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대방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여부 확인 의무
 - ※ 법 제12조제1항(수의계약 제한 대상) :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 **(확인 의무 대체)**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제출받는 방식의 확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배포('22.2.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 **(확인서 제출 대상 제한 등)** 확인서 제출에 대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기관 계약부서의 계약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한정하여 확인서 제출 한정('22.3.3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 동일한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 대표 또는 기관의 제한 대상자 동일시 최초 제출 확인서로 갈음
 -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물품 등 구입의 경우 확인서 제출 면제
- **(확인서 제출 생략)**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경우 계약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1인이 해당 기관의 모든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부담 정도가 경감되지 아니함(시·도 교육청의 의견)
 - 소액 구매 지출, 출장 중 일회성 지출 등 확인서 징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견적서 제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확인서 제출도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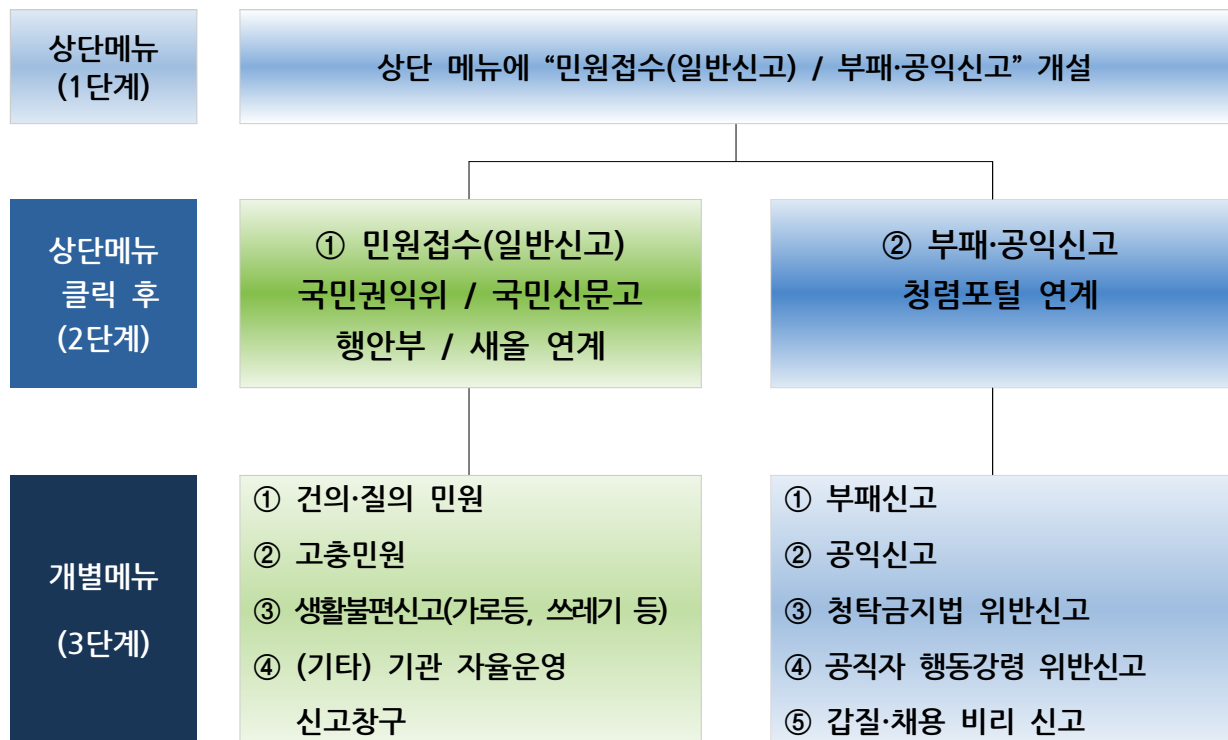
연번	유 형	콘 텐 츠 명	내 용 요약
1	교육영상물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2020년 제작)	아동 대상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청렴 가치관을 전달하는 영상물(3종)
2	교육영상물	권익슈카 (2021년 제작)	유튜버 슈카월드가 출연해 국가 청렴도의 중요성, 공익신고 주요 사례 등을 소개(2편)
3	교육영상물	청렴 우수사례 탐구생활 (2021년 제작)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시책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물(3편)
4	교육영상물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영상 (2021년 제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의의, 법 주요내용 등에 대해 권익위 원장이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영상물
5	교육영상물	EBS 지식채널e '그것의 세상' (2021년 제작)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 하여 청렴연수원이 EBS와 공동 기획·제작한 대국민 청렴교육 영상
6	교육영상물	'지방의회, 청렴을 부탁해' (2022년 제작)	지방의회 맞춤형 사전교육용 영상 콘텐츠로 지방의회의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청렴도 향상 노력을 소개
7	온라인 공개강좌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019년 제작)	청렴과 인문학을 연계한 패널간 토크 형식의 영상물(6차시)
8	온라인 공개강좌	'문화와 생활 속 청렴'시즌 2 (2020년 제작)	세계의 청렴국가를 유명 외국인 패널들이 소개하는 영상물(6차시)
9	북 러닝 영상	청렴 북 러닝 (2020년 제작)	청렴 주제와 관련된 책을 분야별 전문가 들이 요약하여 전달하는 영상물(4편)
10	청렴 북콘서트	청렴 북콘서트 (2021년 제작)	분야별 전문가가 청렴 필독서를 선정,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시(5편)
11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영상, 노래, 시 등	'19년~'21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영상분야 수상작(104편)
12	웹 드라마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2020년 제작)	중고등학생 대상 청렴 웹드라마 (4편)
13	웹 드라마	청렴 웹드라마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 (2021년 제작)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당·차별에 당당히 맞서며 우정을 통해 청렴 가치관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야기 (6편)

① 신고창구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제공

➡ 이용자들이 손쉽게 신고창구를 찾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1)** 누리집 메인화면에 “민원접수와 부패·공익신고”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고 항목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2)** 신고내용, 신고자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판 형태”의 신고창구 운영 지양

< 신고창구 통합 방안 및 접근경로(예시) >



- ▶ **(일반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접수
예시) 생활불편(가로등 보수, 쓰레기 수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공무원 단순 불친절 등
- ▶ **(부패·공익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
예시) 농지법·방위사업법 등 471개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신고 창구로 연계

② 부패·공익신고 창구 운영 개선

➡ 법적근거, 신고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창구 운영

- **(조치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신고 소개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 사항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신고하기’로 바로 연계
 -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국민신문고로 연계하지 않도록 유의)
 - ※ “게시판 형태의 신고창구 운영”으로 발생하는 신고제목, 신고자 정보 등 노출이 원천적 차단한 상태로 신고 가능
- **(조치2)** 기타 민원성* 신고 → ‘국민신문고’ 등으로 연결
 - * 건의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생활불편신고(가로등, 쓰레기 등), 기타 기관 자율운영 신고창구
- **(조치3)** 공공기관에서 신고창구 자체 운영이 어렵거나 청렴포털 개설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여 국민권익위에 신고토록 조치

③ 부패·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신고토록 조치

➡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기관에 직접 접수가 원칙

- **(조치1)** “익명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보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창에 사전 안내 조치

< 안내문 예시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2)** “실명신고” 부패·공익신고는 신고자 보호·보상이 연계되므로 신고기관이 직접 접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민간 위탁 운영 지양

④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신고시스템 운영 철저

➡ 법률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유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안관리 철저

- (조치1) 신고접수 과정에서 업체의 업무담당자 외 직원이 신고정보를 열람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체 대상 신고자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조치2) 민간 위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업체에서 신고관련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조치(자료 폐기 관리)
- (조치3) 시스템 운영 중 권한에 따른 접근 관리가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기록이 관리되어야 함(6개월 이상 보관)
- (조치4) 시스템 취약으로 인해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보 보안 관리인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조치
 - ※ 용역사업 발주 계약 시 공고서 등에 용역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 누출금지 정보 등 관련법령 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임을 사전 공지
- (조치5)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및 웹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 후 운영
 - ※ 사용자 패스워드 설정 시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토록 관리
- (조치6)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신고자, 참고인 등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를 추정 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관리 철저

⑤ 최신 법령 등에 기반한 올바른 신고 정보 제공

➡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제도, 신고자 비밀보장, 보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공토록 조치

- (조치1) 홈페이지 콘텐츠를 최신의 것으로 수정·운영하여 신고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 공익신고 관련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주소/명칭, 징역, 벌금 부과 금액, 보상금 상한액 및 하한액, 기존 운영지침 제공 등 오류 등 조치
- (조치2)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포털로 연결하고, 부패·공익 신고 관련 제도 등 소개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내 제도 소개 부분으로 가급적 연결(신고를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은 유의) 조치

6 신고시스템 본인확인 시 고려사항

➡ **본인확인(실명, 신원확인, 로그인 등)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신청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1)** 신고 접수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한 조회방식은 신고자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크고 보안에 취약하므로, 본인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 청렴포털 오프라인 신고도 등록하여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리 중
 - ※ 오프라인에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게 관리
- **(조치2)**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이용시, 신고인이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이외 1개 이상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치
 - * 본인확인 :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주민과 실명확인서비스 등
 - 본인인증(로그인) : ID/PWD, SMS, OTP, 생체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공인인증서 운영방식>

방 식	특 징	비 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체계	패스워드 9자이상 (영문, 숫자, 특수 문자 포함)
IPIN	·아이핀은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도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서 ·'20년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는 말이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디지털원패스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간편인증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 ·단, 간편인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 인증서 발급	
휴대폰본인확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와 해당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지 동시에 확인 가능 ·PASS, QR, PIN, 지문, 문자인증 등 방식 제공	
실명확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	

7 기관자체 운영 중인 민원창구에 부패·공익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 민원창구로 접수되었더라도 부패·공익신고 등 해당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적용됨
- 이에 업무 처리담당자에게 배정 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등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스템 상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고지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8 기관 자체 신고처리시스템에 대한 신고자 보호 강화

➡ 원칙적으로 청렴포털 이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 자체 운영

- (조치1) 신고 조회, 접수 화면 등 인쇄버튼 클릭 시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인쇄되지 않도록 조치
- (조치2) 담당자 처리화면에 개인정보보호 주의사항 외에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 추가 안내

개념

임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기반 구축			
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9~10월	전 지자체
②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교육 이행	연중	전 지자체
③	권익위에서 이첩한 위반행위 신고사건 조사·결과통보 등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④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등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	연중	전 지자체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			
①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적극 참여	10~11월	전 지자체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추진			
①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및 사례 적극 홍보	연중	전 지자체
②	공공재정지급금 관리 강화	연중	전 지자체
③	부정청구 발생 시 환수 등 법적 조치사항 이행	발생시	전 지자체
④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	2월, 8월	전 지자체
⑤	제도개선 의견 제출	연중	전 지자체
⑥	컨설팅 신청 및 대상기관 협조	연중 (수시)	전 지자체 (해당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4. 지방자치 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①	개선과제 발굴 등 협력체계 구축	8월 ~	해당 기관
②	개선과제 권고 이행 및 자체 부패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연 중	해당 기관
5. 공직자 청렴교육 이행력 강화			
①	기관별 '22년 청렴교육 이행 실적 관리 철저	연 중	전 지자체
6.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및 홍보			
①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해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 보호 철저	연 중	전 지자체
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시 권익위 협조 요청	필요시	해당 기관
③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협조	9월	해당 기관
7. 온라인 부패·공익 신고 창구 관리 강화			
①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요청	9월	전 지자체
②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 철저	연 중	전 지자체
③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준비·활용 협조	연 중	전 지자체
8. 비위면직자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 제도 안내 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 보관	연 중	전 지자체
9. 부패신고사건의 처리			
①	이첩 받은 부패신고 사건의 직접 처리 및 재이첩 등 처리 필요시 권익위 사전 협의	연 중	전 지자체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0. 청렴노력도 평가 확대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강화			
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철저 및 우수사례·증빙 등 확보	연 중	전 지자체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즉시	전 지자체
③	청렴노력도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초	전 지자체
④	부패실태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보완 협조	~12월	전 지자체
⑤	현지점검 시 적극 협조	~12월	해당 기관

2. 부서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이병화	감사관 회의 운영 등	044)200-7612	044) 200-7939
	정영수	청렴컨설팅 총괄	044)200-7615	
	송두원	청렴교육 총괄	044)200-7618	
청렴조사 평가과	김일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평가 총괄)	044)200-7633	044) 200-7940
	이하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초지자체(시) 담당)	044)200-7635	
	이지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초지자체(군) 담당)	044)200-7637	
	황인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초지자체(구) 담당)	044)200-7638	
부패영향 분석과	류종하	지방자치 법규 부패영향평가	044)200-7664	044) 200-7941
	박중하		044)200-7665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TF	조유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총괄	044)200-7672	044) 200-7942
	김희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044)200-7674	
	조수연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및 홍보 기획	044)200-7679	
	권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및 홍보 운영	044)200-7681	
	김종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조사처리	044)200-7678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탁금지 제도과	권문택	청탁금지제도 제도운영	044)200-7704	044) 200-7944
	이준민	청탁금지제도 기획총괄	044)200-7703	
	정나리	청탁금지제도 제도운영	044)200-7708	
	김윤구	제도운영 현황 실태점검	044)200-7706	
심사기획과	김남행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89	044) 200-7943
	우은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한수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보호보상 정책과	김희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044-200-7752	044) 200-7948
	김인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등 교육	044-200-7757	
공공재정 환수제도과	박종혁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2	044) 200-7690
	서현우	이행실태점검	044)200-7644	
	김시형	컨설팅	044)200-7643	
	정혜정	교육 및 홍보	044)200-7645	
	임성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044)200-7647	
	김시준	청렴노력도평가	044)200-764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부패심사과	나조운	부패신고사건 처리	044) 200-7728	044) 200-7946
	김도원		044) 200-7726	
	이규무		044) 200-7722	
	이지훈		044) 200-7731	
	오수영		044) 200-7732	
	이재만		044) 200-7729	
	정인원		044) 200-7727	
	모형오	부패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720	